제37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일시 1960년8월8일(단기4293년) 상오10시25분

개회식순

1. 개식
1. 국민의례
1. 식사(의장)
1. 인사(시장)
1. 만세삼창
1. 폐식

(10시 25분 개식)

○간사장 이종용; 지금으로부터 개회식이 있겠읍니다.

(일동 국기에대한 경례)

이어서 의장님 식사가 있겠읍니다.

○의장 홍순우; 오늘 제37회 임시회 개회식에 임해서 所懷의 일단을 말씀드리게 된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6월말일로서 우리 정기회의를 끝마치고 그다음월여동안 여러분들께서는 7·19 선거 또한 의회태세의 정비에 대해서 여러가지로다가 고심한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우리 임기로 얘기하자고 할것 같으면 8월12일로서 종료가 됩니다.

아마 이 회의로서 우리 임기까지를 마치고 그다음에 우리

4년동안 의원직은 이것으로서 종료가 된상싶다 그동안에 여러의원들 께서는 시정 발전에 많이 노력을 하셨고 또한 우리 의회의 자체의 정비 문제에 있어도 주야 근심하신데에 대해서 재삼 감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이 임시회의 기간중에는 그동안에 산적한 심의안건을 다 처리하셔 가지고 남김없이 모든것을 처결해서 우리 시민의 복지향상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심심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이자리를 빌려서 보고드릴것은 지난 7월22일 23일에 지방의장단회의를 소집했읍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다가 지방자치법개정에 대한 건의안을 통과시켰고 또한 그 건의가 공백상태를 매우는 그 방향이 어떠한 좋은 타개책이 없겠는가를 그 안건을 가지고 토의를 했든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5일날 재차 또 전국지방의회의장단회의를 소집해서 그동안에 국무총리 내무장관 국회의원 여러분들을 역방을 해서 좌우간 지방의회의 기능을 마비않되도록 중단이 않되도록 하는 입법 조치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을것 같으면 지방자치법을 개정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임기 끝나기 전에 어떠한 조치를 해달라는 것을 건의했읍니다.

지금 제생각 같아서는 이것이 12일날로다가 이 회의가 종료가 됩니다만은 지방 시읍면에 있어서는 어저께 또한 오늘이 임기가 종료되는 곳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회에서 입법조치 여하에 따라 가지고 이미 의원 임기가 중단이 되었다고 하드라도 또한 다시 계속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입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도 들었읍니다.

그러니 좌우간 그것은 어떻게 되었던 간에 우리는 8월12일이 우리 임기종료 기한인줄 아시고 여러 심의안건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모든 기능을 발휘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건강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자중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간사장 이종용;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시장직무대리 정종철; 오늘 시의회 제37회 임시회 개회식에 즈음하여 인사를 올리게 됨을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차 제37회 임시회는 역사적인 제5대 국회의 개원과 같은 날에 개회하게 되었음을 더욱 의의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국회에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임시조치가 어떻게 입법화 될는지 예측할수 없읍니다만은 이번 의회는 현행자치법에 의한 최종회기 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 초대시의원제위는 그동안 몇분 의원이 사퇴와 보선이 있었읍니다만 4289년8월13일 당선이래 금일에 이르기까지 4년간 오로지 시민의 올바른 여론을 시정에 반영하여 획기적인 시정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서 2백만 시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여 왔아음을 찬양하여 마지 않사오며 특히 4월혁명후 과도기의 어려운 시정의 뒷받침이 되어 주시고 격의없는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바라옵건데 존경하는 시의원 각위께서는 금차 회기중 기간 미진한 제반안건을 원만히 처리하시어 초대시의회로서의 빛나은 사명을 완수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인사를 대하는 바입니다.

단기4293년8월8일

서울특별시장 직무대리

부시장 정종철

○간사장 이종용; 다음은 만세삼창이 있겠읍니다.

부의장님께 선창을 부탁하겠읍니다.

(일동 만세삼창)

(일동 박수)

이상으로서 개회식을 끝마치겠읍니다.

(10시 35분 폐식)